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0
----------	-----

제출년월일 : 2017.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2013년 10월 4일 제정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로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 법제처 검토의견

: 평창군 지역보건의로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나.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자격, 정원, 구성, 위임·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 삭제

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함.
-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17. 8. 25.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반영(안 제7조의2제1항)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로, “설치·운영 할”을 “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해당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4.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상담심리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보건, 의료, 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3. 평창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
 4. 평창군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군 소재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1. 위원장 등의 직무
 2. 회의의 소집통지, 의사·의결정족수, 공개·비공개 및 운영규정
 3. 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4.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자살예방 ·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u>설치·운영 할</u> 수 있다.</p> <p><신 설>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심의·자문한다.</p> <p>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p> <p>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p> <p>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p> <p>-----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 ----- ----- 둘 ----- -----.</p> <p>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p> <p>3. 해당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 회 협력체계의 구축</p> <p>4.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p> <p>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 의료원장으로 한다.</p>

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
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 위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
자, 상담심리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보건, 의료, 복지 관
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3. 평창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
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
의

4. 평창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군 소재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1. 위원장 등의 직무
2. 회의의 소집통지, 의사·의결 정족수, 공개·비공개 및 운영 규정
3. 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4.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4820